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9. 6. 27(목) 총 4매(본문3)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주종완, 서기관 심병섭, 주무관 이건준 ·☎ (044) 201-3512, 3513	
관련 단체	대한건설 협회	정보 관리실	·실장 노유선, 부장 최영근, 부장 이범호 ·☎ (02)3485-8321, 8333, 8338	
보도일시		2018년 6월 2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2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SK건설 · 동원건설산업 · 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우수업체 2,748개사 선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공 입찰 시 우대

- 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주)이,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주)와 라온건설(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748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 선정된 우수업체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별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 우수업체 우대현황 》

상호협력평가 점수	가산점					가 산	감 경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평가액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건설산업 기본법상 별점
	PQ 및 적격심사	종합심사	PQ	적격심사	종합평가		
95점 이상	3.0	0.20	2.0	3.0	0.5	6%	0.5점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18					-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0.16	1.5	2.2	0.4	5%	-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0.14	1.0	1.4	0.3	4%	-
60점 이상 70점 미만	0.5	0.12	0.5	0.5	0.2	3%	-

※ 우수 건설사 주요 사례

구 분	우 수 사 례
SK건설(주)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재무·기술지원 실적, 해외건설 동반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실적을 인정 받음
동원건설산업(주)	14개 모든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무비 지급 및 200여건에 달하는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조기 대금 지급
라운건설(주)	건설업 윤리경영에 표창을 받은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적 인정 받음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 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 지난 ‘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하였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기준 》

구분 \ 평가분야	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 육 성	신인도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실적
대 기 업	100점	10점	20점	58점	12점	+3점(가점)
중소기업	100점	-	25점	53점	22점	+3점(가점)

* 대기업: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 업체(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6,000억 원 이상) 54개
중소기업: 대기업 외의 종합건설업체 12,877개

-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주),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주)와 라온건설(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95점 이상	228	214	179	17	12	10	211	202	169
90점 이상	390	389	429	18	16	23	372	373	406
80점 이상	800	815	821	8	11	9	792	804	812
70점 이상	782	743	737	3	1	1	779	742	736
60점 이상	548	515	514	2	2	1	546	513	513
소계 (60점 이상)	2,748	2,676	2,680	48	42	44	2,700	2,634	2,636
60점 미만	274	295	273	1	2	3	273	293	270
신청 업체수	3,021	2,971	2,953	49	44	47	2,972	2,927	2,906

※ '19년 우수업체(2,748개)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2,931개)의 21.2%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예정 으로서 현재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며,
 -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 유도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올해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 공개 > 행정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심병섭 서기관(☎ 044-201-3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 (근거) 국토부장관은 '99년부터 매년 6월말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u>10점</u>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2. 하도급 실적	<u>20점</u>	<u>25점</u>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u>58점</u>	<u>53점</u>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u>30점</u>	<u>30점</u>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u>10점</u>	<u>10점</u>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u>10점</u>	<u>5점</u>	
다. 상생협업체 운영	<u>5점</u>	<u>5점</u>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u>3점</u>	<u>3점</u>	
4. 신인도	<u>12점</u>	<u>22점</u>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 관련 표창실적 등	(2점)	(2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감점	(10점)	(20점)	해당업체 감점
5. 가점	<u>+3점</u>	<u>+3점</u>	
-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실적	(+3점)	(+3점)	배점 외 가점
총 계	100점	100점	

□ 평가효과 : 우수업체 우대

상호협력평가 점수	가산점					가 산 시공능력평가액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감 경 건설산업 기본법 상 별점
	조달청		지자체				
	FQ 및 적격심사	종합심사	PQ	적격심사	종합평가		
95점 이상	3.0	0.20	2.0	3.0	0.5	6%	0.5점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18					-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0.16	1.5	2.2	0.4	5%	-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0.14	1.0	1.4	0.3	4%	-
60점 이상 70점 미만	0.5	0.12	0.5	0.5	0.2	3%	-

※ 60점 미만은 우대사항 없음